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(법률 제20192호, 2024. 2. 6. 공포, 2025.1.1. 시행)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정책추진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실종아동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(안 제8조의3 신설)

- 1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을 작성하고, 경찰청장은 제4호, 제5호, 제7호 및 제9호의 내용을 작성한 후 각각의 내용을 통합한 연차보고서를 각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.
- 2)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및 중앙치매센터, 그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함.
- 3)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
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서 정한 소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을 작성하고, 경찰청장은 제4호, 제5호, 제7호 및 제9호의 내용을 작성한 후, 각각의 내용을 통합한 연차보고서를 각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및 중앙치매센터, 그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서 정한 소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3(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을 작성하고, 경찰청장은 제4호, 제5호, 제7호 및 제9호의 내용을 작성한 후, 각각의 내용을 통합한 연차보고서를 각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및 중앙치매센터, 그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서 정한 소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</u>

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89